

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2. 12.
제 출 자	구 미 시 장

1. 제정 이유

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, 방법과 이를 감정,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에서 운영하고자 구미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가.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- 나.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공연장,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 권장할 수 있음
- 다.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, 조각, 공예 등의 미술장식품을 제작 건축물 소재지내에 설치해야함
- 라.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하며 건축물사용 승인이전까지 미술장식품 설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해야함.
- 마.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개관적 감정평가를 위해 미술, 건축, 환경, 공간디자인,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함
- 바.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직무, 회의, 위원의 참석범위, 심의,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함
- 사.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어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함

3. 참고사항

시·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준칙(안)시달,
경상북도 문예86400-13786(2002.11.19)호

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

제2조 (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) 구미시장이(이하“시장”이라한다)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·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【별표1】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1. 공동주택(다만,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)
2. 업무시설
3. 숙박시설
4. 판매 및 영업시설
5. 위락시설
6.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, 통신용시설
7. 의료시설 중 병원
8.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

제 3 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

제3조 (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)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건축주” 라 한다)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관할 시장에게【별지 제1호 서식】에 의거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·심의한 후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 (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)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【별지 제2호 서식】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,000 분의 5로 한다.

제6조 (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,000분의 1로 한다.

제7조 (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)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미술장식심의위원회

제8조 (설치)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9조 (기능)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
2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3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4.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
5.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
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기획정보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 중 주택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,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제11조 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 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 (위원의 참석범위)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14조 (심의)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.

제15조 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16조 (간사 및 서기)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문화담당이 된다.

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.

제17조 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 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0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								
건 축 개 요	위 치							
	건 축 주		성명 :		주소 :			
	지역 · 지구							
	대지 면적		건축면적		연 면 적			
	층 수		최고높이		구 조			
	용 도		외장재료		건축종별			
	허가일자		사용검사 예 정 일		총공사비			
건 축 설 계 자	주 소							
	사무소명		성 명		전 화			
미 술 품 개 요	작품 ①	작 가 명	작 품 명		작품가액			
		전화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	
	작품 ②	작 가 명	작 품 명		작품가액			
		전화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	
	작품 ③	작 가 명	작 품 명		작품가액			
		전화번호	재료(색상)		규 격			
	총설치수		조각 점, 회화 점, 기타 점, 계 점					
	총 가 액		설치예정일					
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구미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 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 년 . . . 신청인 : (인) 구미시장 귀하								
첨부서류 1.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 사본 3부 2. 작가경력서 사본 1부 3.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 15부(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)								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미술장식품 가격 통지서

제 호

구미세무서장 귀하

구미시장

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,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 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건 개 축 요	위 치					
	건축주성명		주 소			
	지역·지구			건축종별	신축, 증축	
	대지면적		건축면적		연 면 적	
	층 수		최고높이		구 조	
	허가일수		사용검사일		총공사비	
건 설 계 사	주 소					
	사무소명		성 명		전 화	
미 장 개 식 품 요	작 가 명 (전화번호)		작 품 명		규 격 (재료, 색상)	
	주민등록번호				작품가액	
	작 가 명 (전화번호)		작 품 명		규 격 (재료, 색상)	
	주민등록번호				작품가액	
	작 가 명 (전화번호)		작 품 명		규 격 (재료, 색상)	
	주민등록번호				작품가액	
	총 설 치 수	조각 점, 회화 점, 기타 점, 계 점				
	총 가 액			설 치 예 정 일		